

2005. 10. 19.

제122회 임시회 산건위 제1차회의

조 례 안 검 토 보 고

- ① 거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안
- ②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5. 10. 12.

나. 제출자 : 이 현 영 의원 외 7인

다. 회부일자 : 2005. 10. 14.

라. 의안번호 : 제2005 - 57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정부에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하여 야생동물을 잡는 사람뿐 아니라 먹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일변도의 정책으로 야생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농민의 농업 생산 활동 시 인명피해 발생이 증가 되어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사항의 보완과 결실기의 농작물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작물 피해보상도 할 수 있게 전부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안을 총칙과 농작물 피해보상 및 인명 피해보상으로 구분 하여 4장 17개조로 하였으며,

-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목적에 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에서 야생동물에 조수류를 추가하였고, 농작물, 농작물 피해, 피해 농업인 등을 추가로 규정하였음 (안 제2조).
- 농작물 피해보상의 보상요건으로 피해면적 100평(실경작 면적기준), 또는 피해금액 30만 원 이상으로 본인이 신고한 경우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
- 농작물 피해신고를 읍·면장에게 하고 조사는 관계공무원이 신고인 입회하에 실시토록 규정함 (안 제4조).
- 보상금지급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정하였음 (안 제5조).
-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출하가격의 70%를 기준으로 함(안 제6조).
- 보상금 지급절차는 현장조사 후 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후 청구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함 (안 제7조).
- 법령상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 경작 및 농외소득이 60% 이상일 경우 보상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안 제8조).
- 인명피해에 대한신고는 14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관계공무원이 조사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위원수를 9명 이내로 조정하고, 군의원, 농업인 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음 (안 제14조).
-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16조).

3. 검토의견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우리 군은 덕유산을 비롯하여 주변지역이 높은 산으로 둘러쌓인 산간지역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에 적합한 환경이라, 멧돼지, 고라니, 독

사류 등의 번식이 왕성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법령상 적정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의원 발의로 2004년 10월에 거창군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부의 야생동식물에 대한 정책이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 일변도이므로 야생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인명 피해뿐 아니라 결실기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 농업인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농작물 피해보상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함.

나.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

- 조례안을 전부개정 하면서 총칙과 농작물 피해보상 및 인명 피해보상 등 4장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개정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으며,
- 안 제1조(목적)에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음.
- 안 제2조(정의)
 - 제1호 “야생동물”에 야생조수까지 확대 개정 하였으며,
 - 농작물 : 정의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고
 - 농작물 피해 : 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의 피해보상 기준 또는 경상남도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지침에 의한 농작물로 규정하도록 추가하였으며,
 - 피해 농업인 :정의를 신설함.
 - 농업인 : 에 대하여 「농지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로 개정함.

- 안 제3(보상요건) 제2장 농작물 피해 보상이 추가됨에 따른 보상요건을 농지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 피해금액 30만 원 이상일 때 피해보상 청구를 한 경우 예산의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규정함은 적절한 규모로 판단됨.
- 안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고하여, 군수에게 보고되면 관계공무원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함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안 제5조(보상금 지급기준) 동일 경작지에 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토록 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피해액 산정)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 가격의 70%로 산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안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보상금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1개월 단위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 결정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 순서를 정하여 지급토록 함은 업무상 효율적인 조치로 판단됨.
- 안 제8조(보상 제외) 경작이 금지된 지역의 농작물과, 농외소득이 60% 이상일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실질적인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 안 제9조(지원요건) 제3장은 기존의 인명 피해보상에 대한 것으로 지원요건 중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비농업인도 농업인의 생산활동에 종사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함은 농민의 부담을 줄인 조치라 판단됨.
- 안 제10조(피해신고 및 조사) 3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던 것을 14일 이내로 변경한 것은 중상일 경우를 대비한 충분한 시간이라 검토되었으며.

- 안 제11조(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 종전 제5조의 피해액 산정과 제8조의 지원금 지급을 하나의 조로 변경한 것으로 효과적인 조치라 판단됨.
- 안 제12조(지원제외) 최소 피해액 규정은 지원금 지급에 정해져 있던 것을 지원제외 조항으로 변경한 것이며.
- 종전에 1개조로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를 제4장에서 4개조로 개정하는 안을 만든 것으로, 안 제13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하고, 안 14조에서 위원회 구성을 5인에서 9인 이내로 확대 개정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하고, 제 16조에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한 것은 관리상 적절한 조치라 검토되었으며.
- 동 전부개정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자료

- 「야생동·식물 보호법」
- 「농어업 재해대책법」
- 「농지법」
- 「지방자치법」 제15조
- 집행부 제출의견 검토서

검 토 의 견 서

부서별	검 토 의 견	비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 열악한 재정여건과 타계증과의 형평성 문제로 예산지원이 곤란함 ('05 당초예산기준 : 재정자립도 15.3%)	지원 곤란
산림환경과	○ 임업인도 1차 산업에 종사하므로 농업인과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임업인도 포함하여야 함 ○ 제3조의 지원대상은 3년 이상 거창군내에 거주하고 소유임야 100,000㎡ 이하인 임업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수정
건 설 과 (건설행정담당)	○ 소유농지가 10,000㎡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대상범위가 너무 넓어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대만큼 지원되지 않는데 대한 불신 우려가 있으므로 - 지원대상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수정
	○ 농로개량, 도수로 개량 등 영농편의사업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시설로서 수혜농가 중에는 지원대상 농가와 비지원대상 농가가 혼재할 수 있고 - 일련의 연결 상태에 있는 시설을 지원대상 농가의 요구 구간만 부분적으로 개량할 경우 시설의 효율성을 기할수 없으므로 - 공동이용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수정
	○ 대상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상 구분이 모호하므로 - 인적기준과 물적기준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농업인 정의를 명확히 하여 민원 사전 예방 ○ 지원대상지역을 삭제하고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함 ○ 사업비의 50%범위내에서 지원비율은 군수가 정함, ○ 업무분장 : 사업신청과 감독은 읍면에서 사업비 지급은 본청	수정

- 검토부서 : 농업기술센터(농정과)
- 검토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농촌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 농업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차후 대상자 선정 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타 조례(「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와도 용어의 정의가 같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3조(지원대상) ①대상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 ①항 삭제.

※ ①항에서 대상지역을 정하지 않고 ②항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의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지역의 영세한 농업인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제5조(지원기준) ① 지원금은 사업비의 50% 이내로 한다.

→ 지원금은 사업비의 50% 이내로 하고, 지원 비율은 군수가 정한다.

※ 지원비율을 정할 수 있는 자를 명시

제8조(사업의 신청)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①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읍면장이 신청한 사업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 대상자는 읍면장에게 사업 착수신고를 하고 사업 추진사항을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민원편의 도모 대상자를 확정, 통지하는 근거 마련
사업착수 신고를 읍면장에게 하도록 하여 읍면장이 사업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제9조(사업비의 청구)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1월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①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관계 서류를 첨부, 읍면장에게 사업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사업의 완료사항을 확인하고, 읍면장의 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업비를 청구한다.

③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읍면장에게 사업비를 청구함으로써 농업인의 민원편의 도모 읍면의 관계공무원 현장 확인으로 사업의 완벽성을 기하고 사업비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체계 확립